

[학점이수인정 기준학점 산정 기준]

◎ 관련근거

- 「졸업종합시험 및 졸업에 관한 규정」 제19조, 제19조의2
- 「부전공 및 복수전공 규정」 제8조

1. 전공, 교양(교양영역필수)

- 가) 학기별 학과 및 학년별로 개설된 이수구분별 학점 범위 내로 함.
- 나) 기준학과별 상위 학년은 하위 학년에 개설된 이수구분별 학점을 포괄하며, 전체학년을 대상으로 개설된 이수구분별 학점은 각 학년별 적용함.
- 다) SIS.ECIS교양에서 개설된 이수구분별 학점은 대상학과에만 적용하고, 이 외 전체학과에는 교양대학에서 개설된 이수구분별 학점을 기준으로 적용함. 상위 학년은 하위 학년에 개설된 이수구분별 학점을 포괄하며,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개설된 이수구분별 학점은 각 학년별 적용함.

2. 트랙, 부·복수전공

- 가) 트랙, 부전공을 이수하는 학생의 이수구분별 학점의 범위는 2학년 1학기 부터 여름·겨울학기를 제외하고, 학기당 최대 6학점까지 트랙, 부전공학점으로 인정함.
- 나) 복수전공을 이수하는 학생의 이수구분별 학점의 범위는 학기당 최대 6학점까지 복수전공학점으로 인정함.